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 이행 소홀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과 지방○○○○○○○○ ○○○
(전 ○○○○○○○○○과)
- ② 충청남도 ○○○○○○○○○과 지방○○○○○○ ○○○
- ③ 충청남도 공주시 농정유통과 지방○○○○ ○○○
- ④ 충청남도 논산시 ○○담당관 지방○○○○○○ ○○○
(전 ○○과)

내 용

지방○○○○○○○○ ○○○는 2016. 1. 20.부터 2017. 7. 19.까지, 지방○○○○○○ ○○○는 2017. 7. 20.부터 현재까지 각각 충청남도 ○○○○○○○○○과에서 ‘보육지원 사업’의 실무담당자로, 지방농업주사 ○○○는 2017. 4. 1.부터 현재까지 공주시 농정유통과에서, 지방○○○○○○ ○○○은 2015. 8. 10.부터 2017. 7. 16.까지 논산시 ○○과에서 각각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및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

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해당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14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¹⁾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분을 요구한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아래 [표]와 같이 총 4건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감사처분 조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2014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조치 미 완료 현황

번호	일련 번호	분 야	제 목	처분 요구	소 관	비고
1	76	농림축산식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시정	공주시 논산시	
2	79	농림축산식품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시정	공주시	
3	109	보건복지	해외 출입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적정	시정	○○○○○○○ ○○과	
4	110	보건복지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 ○○과	

※ 자료근거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제출자료

이에 따라 감사 처분에 대한 미 이행 사항을 살펴본 바,

농림축산식품분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건은 소관 관서별로 특정감사 계획 수립 및 충남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하여, 최종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보조금 회수 추진 중에 있으나,

공주시에서는 2016. 12. 7. 충청남도에 “기소유예 3명, 약식명령 8명 확정 판결 결과로 보조금 회수 예고문 발송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2014년 정부합동 감사결과 처분요구’ 조치 결과 제출 후 1년이 경과한 금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1) 행정자치부 ○○담당관-○○○(2015. ○. ○○.) 「2014년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

중(2017. 11. 1.) 보조금 부정 수급대상자 보조금 환수 계획을 수립하는 등 부당 지급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노력을 소홀히 하였고,.

논산시에서는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으로부터 환수 대상으로 결정된 69명과 기소유예 처분된 9명 중 환수대상 69명에 대하여 2016. 7. 5.(○○과-○○○○○○호)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사전 통지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된 9명과 재판중인 1명을 포함한 79명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부당지급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시설원에 품질개선사업 사업비 집행 부적정’ 건은 소관 관서인 공주시(○○과)에서 2015. 3. 30. ‘4대 농업보조금 특정 감사에 따른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환수대상자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회 제공 및 환수대상 금액 통보 후 금번 정부합동 감사 중(2017. 11. 6.)에서야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 예고 통지’를 하는 등 부당 지급 보조금에 대한 환수 조치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보건복지분야 ‘해외 출입국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부적정’ 건은 회수대상 176명 30,310천원 중 128건 21,516천원을 회수하였으나, 미 회수된 10건 1,612천원 및 회수 제외 건²⁾에 대하여 소관 관서인 충청남도(○○○○○○○○과)에서 회수 관서(아산시)에 대한 회수 독려 및 제외 경위 파악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급 부적정’ 건은 회수대상 92명 11,173천원 중 57건 7,167천원을 회수하였으나, 미 회수된 34건 3,805천원과

2) 제외 : 38건 7,182,210원 - 제외사유 오류(중복, 당월회소 등)

회수 제외한 1건 150천원에 대하여 소관 관서인 충청남도(○○○○○○○○과)에서 회수 관서(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논산시)에 대한 회수 독려 및 제외 경위 파악 등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이와 같이 부당 지급된 보조금 등에 대하여 연락두절, 부재, 경제적 사정 등을 사유로 반납고시서 송달, 통보, 방문 등 행정절차만을 이행한 채 압류 등을 통한 회수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처분이후 약 3년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처분에 대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 공주시장, 논산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부정 수급한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속히 환수 등 조치를 이행하고 처분 결과를 우리 부로 제출하고,

② 앞으로 감사 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 기한 내 처분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